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09.15.(화) ~ 2026.09.22.(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용

사업내역

- 가. 공 사 명 : 아성다이소 양주허브센터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주식회사 아성다이소
 다. 설 계 자 : ㈜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라. 시 공 자 : 주식회사 케이씨건설
 마. 감 리 자 : ㈜건축사사무소 건원엔지니어링
 바.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은남산업단지 산업 11-3.11-4
 ○ 대지면적 : 111,600㎡
 ○ 연면적의 합계 : 206,085.6㎡
 ○ 규 모 : 지하1층 ~ 지상4층 (창고동) / 지하1층 ~ 지상5층 (지원동) / 지상1층 (경비실, 세차장)
 ○ 공사기간 : 2026.10. ~ 2028.10.
 ○ 건축허가 : 2026.09.09.
 사. 안전점검비용
 ○ 안전점검비 : 348,347,699원
 (정기안전점검비용,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 금액 : 337,897,268원
 (안전점검비용의 97% 적용, 원단위 미만 절사)
 ○ 복수예비가격
 ▶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 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3. 안전점검 수행예정표

가. 점검종류

항 목	횟 수	사용시기
건축물(초기점검 포함)	4	※ 일정 및 횟수, 점검비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협의
옹벽(초기점검 포함)	3	
천공기 사용 건설공사	2	
항타기 및 항발기 사용 건설 공사	2	
높이 31미터 이상 비계	2	
높이 5미터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2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2	

나.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09.23.(수) 10:00 ~ 2026.10.02.(금) 12: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

라. 유의사항

-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임.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10.02.(금) 15: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2)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를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 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예비 순위가 확정됩니다.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를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들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6.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10.06.(화) 09:00 ~ 2026.10.07.(수)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양주시청 허가과(1층) / 담당자 전자메일(ARIEL7@korea.kr)

- ※ 적격심사 일건서류 담당자 전자메일로 제출(출력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제출서류[예비순위 1~3순위 우선, 서식 참고]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 3)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1부.
- 4) 참여기술자 관련
 - 기술인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건수)
 - 업무중점도 : 공고일 기준 수행실적을 제출한 기술인의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영역 건수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
 - 교육이수확인서 : 해당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
- 5) 안전점검 수행기관 관련
 - 용역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행한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
 - 업무중점도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영역 건수
- 6) 재무상태 건실도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 7) 점검·진단 평가결과 처분 확인서
- 8) 행정제재 여부 증명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
- 9) 기타자료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접수시) 각 1부
- 10) 열람용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각 1부.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10.07.(수) ~ 2026.10.08.(목)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열람방법 : 양주시(허가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 1) 안전점검수행기관신청서[첨부1]
- 2) 자기평가표[서식3]

3)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의 경력

-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라. 이의신청 방법

- 1)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기한 내에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 2)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예시- ○○회사의 △△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3)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합니다.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8. 응모자격 및 평가기준

가. 응모자격 : **우리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139개 업체[첨부2]**

- ※ 해당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함

나. 평가기준[참고자료 2]

구 분	방 법	비 고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된 120개 업체에 대하여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선정	최저가 입찰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방법(참고자료 2)」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수행능력+ 입찰가격)가 가장 높은 안전점검기관 지정 ○ 안전점검기관 지정 공고 시 신청자가 없는 경우, 안전점검비용 1억원 미만의 지정 방법을 통하여 지정	평가점수방식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입찰가격	100점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frac{\text{평가점수(불임 평가기준)}}{100}$	x 40점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 - 4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예정가격}) \times 100 $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9. 기타 유의사항

- 가. 평가자료는 「양주시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자료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실격 또는 지정 취소 처리함.
- 나. 안전점검 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다.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과는 양주시청(<https://www.yangju.go.kr>)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상담은 일체 받지 않으며, 이의 신청을 할 수 없음.
- 라. 공고 기간 동안에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마감일까지 용인시청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 바람.
- 마.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리시에서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 바.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사.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가 해당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 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건축허가 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건축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야 함.
- ※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허가과(☎031-8082-6417)로 문의 바람.

- 첨부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1부.

[서식 1]

접수번호	기재X
------	-----

원본, 부분 구분 표기

사업명 : ○○~○○ ○○○○○○○○공사 정기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필수 기재(담당자를 통해서만 연락)

수행기관명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역명 :
3. 회사명 :
4. 접수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양주시장(관인생략)

수행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기재)

문서번호

시행일자 2026. . .

수신 양주시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귀 시에서 공고한 ○○~○○ ○○○○○○공사 정기안전점검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책자 1부.(원본 1부)
2.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자료 전자파일(CD)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 등본 1부.
6. 참여기술자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7.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8.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1부. 끝.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평가항목		배점	평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자기평가	지정권자	
총계		100			
참여기술인	계	45			
	사업책임기술인	소계	25		
		등급	-	적격	
		경력	12		
		실적건수	7		
		실적금액	6		
	분야책임기술인	소계	20		
		등급	3		
		경력	7		
		실적건수	5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20			
	건수	10			
	금액	10			
신용도	계	15			
	부실벌점	6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6			
	재정상태 건실도	3			
업무중첩도	계	20			
	사업책임기술인	12			
	분야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8			
가점	계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본인(업체)은 양주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주소
대표자 (인)

양주시장 귀하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6. . .

작성자 : 직 성명 (인)

양주시장 귀하

참여기술자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근무경력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참고)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1	예) 00정기안전점검	○○구청	15.01.01-15.6.30 (경력증명서일)	30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해당분야 실적(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참고)

연번	용역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계	건	천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 5년)

연번	용역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주처	비고
합계						

부실벌점 평가결과 [최근 1년]

용역업체 (대표자)	용역명	조치기관명	부실내용		비고
			벌점	사유	

주)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최근 1년]

가. 입찰참가 제한

연도	제재기간	제재사유	제재기관	비고

나.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기술자가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야	성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 주) 1.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자는 "해당 사항 없음" 표시
2.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재정상태 건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업무의 중첩도

☐ 사업책임기술자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고

☐ 분야책임기술자

용역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고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반드시 표기한다.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센터)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
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
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
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할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참 고 사 항>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본 「건설공사(건축분야) 안전점검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수행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 질 수 있음

①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점검비용	심사항목		심사방법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수행능력	-			
	입찰가격	100점	○ 나라장터 가격순위 (참가자 전원 낙찰하한율 미달일 경우 87.745%에 가장 근접한 자를 선정)		
1억원 이상 (적격통과점수 95점) (낙찰하한율 86.745%)	수행능력	40점	평점 =	평가점수(불임 평가기준) 100	x 40점
	입찰가격	60점	평점 = 60 - 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②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	(25)							
	(가)등급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						
	(나)경력	12	1억이상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12	10.8	9.6	8.4	7.2	
			1억미만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	10.8	9.6	8.4	7.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7	1억이상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	6.3	5.6	4.9	4.2
			1억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7	6.3	5.6	4.9	4.2	
		금액	6	1억이상	8억이상	8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6	5.4	4.8	4.2	3.6
				1억미만	7억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6	5.4	4.8	4.2	3.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20)								
(가)등급	3	1억이상	건축특급기술자		건축고급기술자		건축중급기술자		
			3		2.5		2		
		1억미만	건축고급기술자		건축중급기술자		건축초급기술자		
			3		2.5		2		
(나)경력	7	1억이상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	6.3	5.6	4.9	4.2		
		1억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7	6.3	5.6	4.9	4.2		
(다)실적 [최근7년]	건수	5	1억이상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금액	5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5.0	4.5	4.0	3.5	3.0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이상	3억미만 ~2억이상	2억미만 ~1억이상	1억미만	
				5.0	4.5	4.0	3.5	3.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20]						
	(1) 건수 [최근5년]	(10)	1억이상	10건이상	10건미만 ~ 8건이상	8건미만 ~ 6건이상	6건미만 ~ 4건이상	4건미만
				10	9	8	7	6
			1억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10				9	8	7	6	
(2) 금액 [최근5년]	(10)	1억이상	5억이상	5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 3억이상	3억미만 ~ 2억이상	2억미만	
			10	9	8	7	6	
		1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3억 이상	3억미만 ~ 2억 이상	2억미만 ~ 1억 이상	1억미만	
			10	9	8	7	6	
다. 신용도		[15]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6)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미흡’ 처분은 0.3점 감점,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6)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 사 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업무 중첩도		[20]																		
	(1) 책임기술인	(12)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구분</td><td>4건이하</td><td>5건</td><td>6건</td><td>7건</td><td>8건이상</td></tr><tr><td>점수</td><td>12.0</td><td>10.8</td><td>9.6</td><td>8.4</td><td>7.2</td></tr></table>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12.0	10.8	9.6	8.4	7.2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12.0	10.8	9.6	8.4	7.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8)	- 수행중인 다른 용역 건수에 따라 평가																	
			<table><tr><td>구분</td><td>4건이하</td><td>5건</td><td>6건</td><td>7건</td><td>8건이상</td></tr><tr><td>점수</td><td>8</td><td>7.2</td><td>6.4</td><td>5.6</td><td>4.8</td></tr></table>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8	7.2	6.4	5.6	4.8
			구분	4건이하	5건	6건	7건	8건이상												
점수	8	7.2	6.4	5.6	4.8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및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의 용역 건수 적용																				

※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③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방법

I. 일반사항

- 본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른 양주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2에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양주시는 입찰 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배부(또는 공람)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시공사의 확인, 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양주시는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 양주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 양주시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며, 허위자료 제출 및 평가서 미제출 시 0점 처리한다.

9.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0. 본 세부기준은 **경기도에서 작성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공통기준”**을 준용함.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 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해당 분야 : 건축직무(전문)분야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 실적은 해당분야(건축)외의 분야에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ex) 실적(건수) 배점

1억이상	14건 이상	12건 이상 ~14건 미만	10건 이상 ~12건 미만	8건 이상 ~10건 미만	8건미만
	7	6.3	5.6	4.9	4.2

- 예1)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4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4건 = 9건.

⇒ 평가점수 4.9점

- 예2) 해당 분야 용역 5건, 기타 분야 용역 10건

· 실적건수: 해당 분야 용역 5건 + 기타 분야 용역 7건 = 12건.

⇒ 평가점수 6.3점

※ 기타 분야 용역 실적건수가 8건 미만일 경우에는 실적건수 그대로 인정하고, 8건 이상일 경우에는 7건으로 산정.(배점 만점인 7점의 60%인 4.2점에 해당하는 구간(8건 미만)의 최대치가 7건)

4.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관리 전문분야만 해당한다)분야 (이하 “건축 직무(전문)분야”라 한다) 분야의 특급 기술자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직무(전문)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특급, 고급, 중급, 초급기술인”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직무분야에 등록(기재) 되어야 한다.

3)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2인(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에 대하여 평가하며,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전문분야는 건축 직무(전문)분야이어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등 지정공고일 이전에 준공한 용역과, 준공 예정 용역 중 기성검사를 완료한 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경력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 요소별(경력)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365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셋째자리에서 버림)

4)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하는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용역의 실제 참여기간으로 평가한다. 단,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 상에서 실제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에 의함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 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 하여 확인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한하며,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를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3.용어의 정의’ 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 경력증명서 상에 전문분야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분야 외로 인정한다.

3)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경력 및 실적 으로 인정 한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 할 수 있다.

5.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며,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다.

구분	발주자가 발주청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수행중인 용역
증빙 서류	①실적증명서(발주청발급)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횟수 기재	①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 ②계약내역 ③최종보고서 - 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④세금계산서 ⑤실적증명서 - 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등 포함 ⑥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계약서 (변경계약서 포함) ②기성세금계산서

- 유사용역은 최근 5년 이내 수행실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전문성 및 변별력 확보를 위해 용역규모는 준공금 2천만원(VAT포함) 이상 용역으로 한다.
- 유사용역은 수행실적은 '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기타 분야에서 용역 실적을 인정할 경우에는 평가요소별(건수, 금액)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실적증명서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으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실적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21조에 규정된 점검시기별 점검을 모두 수행한 경우 1건으로 산정하며, 일부 차수를 수행한 경우 전체 차수에 대한 해당 차수 비율을 계산하여 산정한다.

- 예) 교량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총3차) 중 1차(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실시의 경우
⇒ 유사용역 실적(건수) 0.33건

6.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처분('미흡' '불량' 또는 '매우불량') 받은 결과를 평가한다.
-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

- 1) 수행기관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 2)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지정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0일마다 0.2점씩 감점(30일 미만인 경우 30일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7. 업무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¹⁾, 민간 등에서 발주한 모든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이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에 따른 용역(초기점검 포함)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용역 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는 다른 용역의 중복되는 용역 건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업무중첩도는 참여 중인 모든 전문분야('3.용어의 정의'기준에 따라 해당분야 및 기타분야)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 최종 선정된 업체의 업무중첩도는 양주시 홈페이지에 7일간 공개하여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받아 평가에 반영한다.

1)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제5조 구분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한다.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 +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 +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